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2364 |
|----------|------|

2018. 2. 2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1. 제안경위

- 2018. 2. 8 남창진 의원 대표 발의 (2018. 2. 12 회부)

### 2. 제안이유

- 건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주차 빌딩 등은 높이가 일반 건축물의 10층에 달하는 40m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3층 이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벽면 이용 간판" 설치시 1개 층으로 간주하여 10층 높이에 간판을 설치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 현행 조례상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권한을 시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하여 수거보상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

르도록 하고(안 제4조제4항),

-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권한을 시장에게까지 확대함(안 제28조제2항).

####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권자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남창진·우미경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2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먼저, 벽면이용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4미터 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도록 신설하려는 것은 층수가 명확하지 않은 건물(주차 건물) 등에 대한 간판 설치 방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이는 현행 조례상 벽면을 이용한 업소형 간판의 설치(조례 제4조제1항제1호)는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간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차건물 등의 경우 그 층수가 10층이고 높이가 40m라 하더라도,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건축물의 3층 이상에 해당하는 높이 또는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br>① ~ ③ (생략)<br><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br>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
|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br>① (생략)<br>② 구청장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br>① (현행과 같음)<br>② 시장·구청장은 _____<br>_____<br>_____<br>_____   |

- 참고로, 옥상간판의 경우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6호 다목)에 규정되어 있음.

○ 둘째, 현재 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의 수거보상 권한을 시장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 불법유동광고물의 경우, 상업용 뿐만 아니라 구청을 포함한 행정기관, 정당, 단체 등이 불법으로 게재하는 공공용 광고물이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 등으로 수거보상원이 정비를 기피하고 있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장에게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구 합동 정비실적을 보면, 공공용이 상업용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거보상제는 일반 현수막 정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수거보상제의 운영상 한계를 보이고 있음.

<2017년 기동정비반 정비실적>

(단위 : 건)

| 계     | 공공용   |       |     |       | 상업용   |
|-------|-------|-------|-----|-------|-------|
|       | 소계    | 행정    | 정당  | 단체등   |       |
| 7,600 | 5,382 | 2,833 | 810 | 1,739 | 2,218 |

※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내부자료

<2017년 수거보상제 실적>

(단위: 건, 천원)

| 구분 | 계<br>(현수막+벽보) |           | 현수막     |         |         |         |       |        | 벽보         |           |
|----|---------------|-----------|---------|---------|---------|---------|-------|--------|------------|-----------|
|    |               |           | 계       |         | 상업용     |         | 공공용   |        |            |           |
|    | 매수            | 지급액       | 매수      | 지급액     | 매수      | 지급액     | 매수    | 지급액    | 매수         | 지급액       |
| 총계 | 23,153,103    | 1,872,985 | 484,922 | 861,099 | 481,489 | 850,630 | 3,433 | 10,469 | 22,668,181 | 1,011,886 |

※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내부자료